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2026. 3.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 · 개정 이력

연번	일시	주요 내용	비고
1	2026. 1. 2.	<제정>	
2	2026. 3. 3.	<1차 개정> • 전용공간 및 옥외영업 부연 설명 및 질의응답(Q&A) 항목 추가	p9, 21, 24~27 추가
3	2026. 3. 19.	<2차 개정> • 3월 19일 발표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사진 등 업데이트) 및 일부 문구 등 명확화 • 사전컨설팅 체크리스트 간소화 및 설명자료 추가 • 질의응답(Q&A) 업데이트(23건 → 38건) 및 별도 파일로 분리	* (참고) 수정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목 차

Ⅰ. 개요 ····· 1

Ⅱ.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개시 절차 ····· 2

Ⅲ.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1. 출입 관리

1-1.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4

1-2. 예방접종 미실시 출입제한----------6

2. 위생 및 안전 관리

2-1. 조리장 등에 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8

2-2.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9

2-3. 식탁의 간격은 충분한 거리 유지----------12

2-4. 음식류 제공시 뚜껑·덮개 등 사용----------14

2-5.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 용품과 구분 사용·보관 등----------15

2-6. 반려동물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16

Ⅳ. 기타 참고자료

붙임 1. 관련 규정 ----------17

붙임 2.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신규 영업신고 시) ----------20

붙임 3. 사전컨설팅 신청서----------21

붙임 4. 사전 컨설팅 체크리스트----------22

붙임 5. 안내문(견본)----------24

Ⅰ. 개요

1. 목적

►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

► **손님이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동안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구체적 실행방법 안내**

2. 관련 규정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준수사항) 제7호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3. 적용 범위

○ 업종 :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이하 “음식점등”이라 함)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4. 기본 원칙

○ 음식점등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

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개시 절차

□ 신규 영업 신고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u>시설 등을 갖춘 후</u>**
✓ **영업신고 전 자율적으로 관할 지방정부에 사전 컨설팅(②~④)을 신청하여 시설기준 등이 적절한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 **<u>사전 컨설팅(②~④)을 받지 않고도 바로 영업신고가 가능함</u>**

① 영업신고 전 준비 (영업자)

①-1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구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사항(붙임 1) 및 동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

①-2 사전 컨설팅 체크리스트 작성(붙임 4)

② 관할 지방정부에 사전 검토신청 (영업자)

○ 관할 지방정부 영업신고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 방법으로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여 사전검토 신청 (*제출방법은 관할 지방정부 문의)

1. 사전 컨설팅 신청서(붙임 3)
2. 영업자가 작성한 사전 컨설팅 체크리스트(붙임 4)
3. (가능한 경우) 시설기준 등 준비사항 사진 등

③ 현장방문 시설 등 확인 (지방정부)

< 서류 및 현장 확인 >
○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는 ②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하여 시설 등 확인
* 현장방문을 한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
○ 미비한 사항 발생시 영업신고 전 영업자에게 보완 요청

④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영업자)

○ ③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보완사항 개선 및 회신

⑤ 영업신고 신청 (영업자)

○ 관할 지방정부에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회신받은 경우 영업신고 신청
* 영업 신고서에 반드시 반려동물 출입 여부 체크(붙임 2)
○ ②~④를 생략한 영업자는 시설 등 준비 완료 후 영업신고 신청

⑥ 영업신고 수리 및 사후관리 (지방정부)

○ 영업신고 수리
○ 1개월 이내에 시설 조사 실시
(사전 현장확인 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설조사 생략 가능)

⑵ 음식점 등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개시 준비사항

◇ **이미 영업중인 음식점등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 **사전컨설팅(②~④)을 받지 않아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함**
✓ **필요시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개시전 사전컨설팅(②~④)을 지방정부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① 영업신고 전 준비 (영업자)

①-1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구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사항(붙임 1) 및 동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

①-2 사전 컨설팅 체크리스트 작성(붙임 4)

② 관할 지방정부에 사전 검토신청 (영업자)

○ 관할 지방정부 영업신고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 방법으로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여 사전검토 신청 (*제출방법은 관할 지방정부 문의)

1. 사전 컨설팅 신청서(붙임 3)
2. 영업자가 작성한 사전 컨설팅 체크리스트(붙임 4)
3. (가능한 경우) 시설기준 등 준비사항 사진 등

③ 현장방문 시설 등 확인 (지방정부)

< 서류 및 현장 확인 >

○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는 ②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하여 시설 등 확인

○ 미비한 사항 발생시 영업자에게 보완 요청

④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영업자)

○ ③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보완사항 개선 및 회신

⑤ 반려동물 동반출입개시 (영업자)

○ 관할 지방정부에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회신받은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개시

○ ②~④를 생략한 영업자는 시설 등 준비 완료 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개시

⑥ 사후관리 (지방정부)

○ 사전검토를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전산 반영

○ 영업자 선택에 따라 ②~④**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확인**된 경우 이를 전산 반영

*** 새올시스템 영업소 정보에 "반려동물 출입여부"를 수동 입력(체크) 필요**

Ⅲ.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1 출입 관리

1-1.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등 표시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1)**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나)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

- 손님이 음식점등 이용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
- 누구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알 수 있는 **그림**(개, 고양이) 또는 **문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영업소의 특성에 따라 글자의 크기, 색깔, 안내문의 크기 등은 자유롭게 하되, 잘 보이게 관리하여, 반려동물 출입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식약처 제공 표지판 도안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등 표시(예시)

○ 영업장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

- 예) 맹견출입 금지, 대형견 출입 금지, 소형견 전용 음식점 등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접객업소에 **출입**할 수 있음(단, 조리장·보관시설은 거부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 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025.4.18. 공포, 2025.4.23. 시행>

1-2.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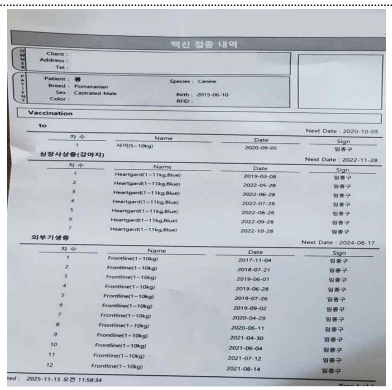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10)**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 예방접종은 동물병원 등에서 발부한 예방접종 증명서·수첩 (원본, 사본 또는 사진), 반려동물 건강앱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음

< 예방접종 확인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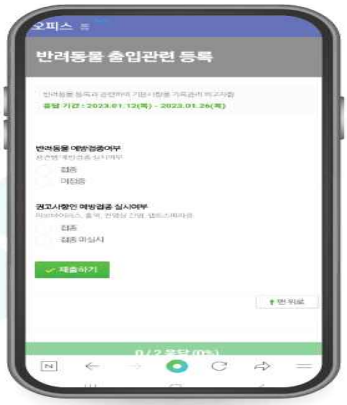
<table>
<tr>
<td></td>
<td>
</td>
<td>
</td>
</tr>
<tr>
<td>동물병원 발급 증명서(예시)</td>
<td>예방접종 수첩(예시)</td>
<td>반려동물 건강앱(예시)</td>
</tr>
</table>

○ 추가로 **수기대장** 또는 **QR**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동반자가 기재**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

① [**수기대장**]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동반자가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기재**

② [**QR 코드**] 반려동물 동반자가 영업장에 마련한 **QR/설문폼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입력**

※ **QR 제작방법**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교육·홍보**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수기대장	**QR 기록**

[※ 3월 19일 운영 개선내용]

2 위생 및 안전관리

2-1.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

◈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나목1)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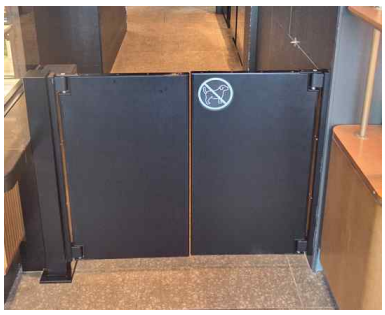
◈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함

○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칸막이·울타리의 재질, 크기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조리장 출입구 칸막이 설치 사례 >

<table>
<tr><td></td><td></td><td></td></tr>
<tr><td>이동형 칸막이</td><td>접이식 칸막이</td><td>열고 닫는 칸막이</td></tr>
<tr><td>
</td><td></td><td></td></tr>
<tr><td>별도의 방으로 구성</td><td colspan="2">고정형 여닫이 문</td></tr>
</table>

[※ 3월 19일 운영 개선내용]

2-2.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관리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3)**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4)**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가)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다) 별도의 전용공간
라)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5)**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손님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① 반려동물은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됨을 고지하고 게시

②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제한 장치를 구비하고,

③ 반려동물의 이동을 관리*하는 등 의무가 있음

* "이동"이란, 영업자가 제공한 장치/공간/장비를 벗어나 **자유로이 움직이는 상태를 말함**

< 예시 >
√ **손님이 이동 제한 장치에 반려동물을 두도록 안내**
√ **이동 제한 장치가 작동되도록 관리(고장여부 확인 등)**
√ **이탈 확인 시 즉시 통제하도록 손님에게 고지 및 조치**

○ 따라서,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의자 등 장치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1개 종류만 구비하는 것도 가능함**

1. 반려동물 전용 식탁, 의자
2. 케이지
3. 목줄걸이 고정 장치
4. 별도의 전용공간* 활용

* 반려동물의 **"이동 제한을 목적"**으로 **개별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구분된** 식탁 공간 등)을 의미합니다.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5. 그 밖에 이동 제한 관리에 부합하는 방법

○ **전용 의자**는 반려동물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손님용 의자 위에 방석·매트**를 깔고 반려동물을 두는 것도 **가능**

- 손님용 의자 위에 반려동물용 방석이나 매트 등을 사용한 이후에는 영업장의 위생을 위해 **손님용 의자를 소독하는 등 위생적 관리** 필요

			
반려동물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손님용 의자에 매트·방석 등 이용**

[※ 3월 19일 운영 개선내용]

○ 상기의 장치 외에도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영업장의 **다양한 시설***(식탁·의자에 고정, 기둥 이용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 모든 손님이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강아지 유모차에만 두거나 안고 있는 경우** 등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할 대상이 없다면 **이동 제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케이지 이용	**강아지용 유모차 이용**	**손님이 안고 이용**

[※ 3월 19일 운영 개선내용]

2-3. 식탁의 간격은 충분한 거리 유지 필요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6)**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식탁의 간격은 충분히 유지

- 식탁 간격은 제한이 없으나, 영업장 공간을 고려하여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공간 배치

* 고정장치, 전용의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견을 안고만 있을 경우 식탁 간격을 조정할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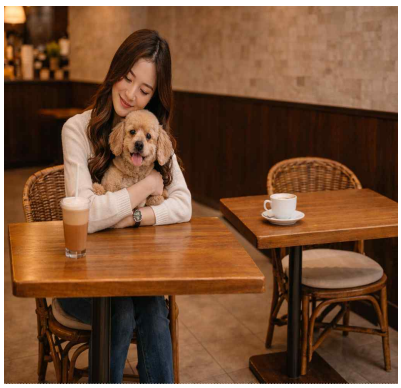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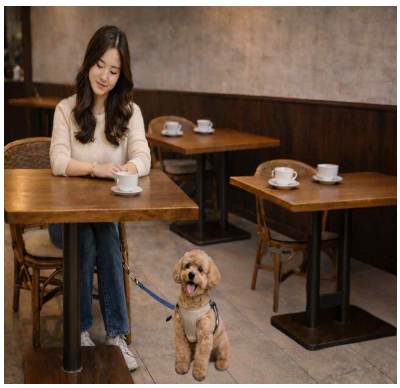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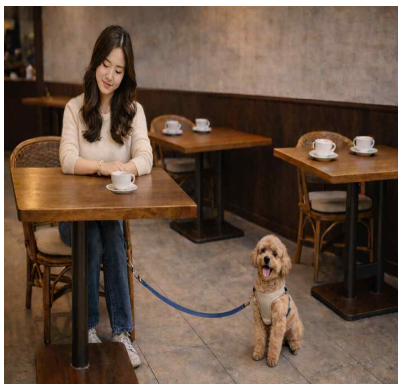
		
케이지 사용하는 경우	일반의자 사용	손님이 안고 있는 경우

[※ 3월 19일 운영 개선내용]

○ 식탁 간격 유지 사례

- 손님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①번 예시)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됨
-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②번, ③번 예시)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유지*

* 반려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보다 식탁 간격이 더 떨어져 있으면 됨

		
①	②	③

[※ 3월 19일 운영 개선내용]

2-4. 음식류 제공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뚜껑·덮개 등 사용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7)**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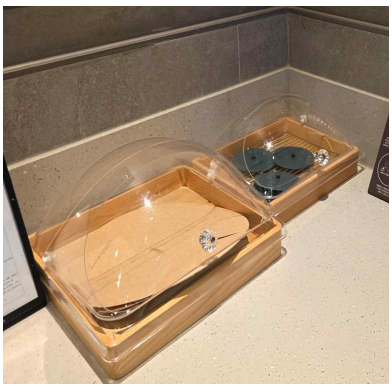
○ 음식 제공 시 **뚜껑·덮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손님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안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픽업대(식탁)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① 픽업대(식탁)에 뚜껑·덮개 등을 비치하거나,
② 손님에게 뚜껑·덮개가 필요한지 문의 후 제공하거나,
③ "뚜껑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등의 문구를 메뉴판, 주문기기 등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함

○ 참고로, 포장된 음식물 등 **이물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뚜껑·덮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예) 병제품, 개별 비닐 포장된 빵 등





뚜껑·덮개 제공(예시)

2-5. 반려동물 용품은 손님용 용품과 구분 사용·보관 및 표시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8)**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 반려동물용 식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반려동물용 식기를 제공**하는 경우,
반려동물용 식기에는 **"반려동물용"임을 표시**하고,
손님용 식기와 구분하여 보관·사용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 장소**' 등을 표시

※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가공하려면「사료관리법」에 따른 요건 충족 필수



반려동물용 표시(예시)

2-6. 반려동물 분변 등을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보목 9)**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 **변도 쓰레기통을 비치**

-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별도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반려동물용 쓰레기통임을 **표시**

* 쓰레기통의 위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전용 쓰레기통(예시)

Ⅳ. 기타 참고자료

붙임 1 관련 규정

■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보. 별표 14 제8호가목1)나)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나)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3)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4)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가)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다) 별도의 전용공간

라)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5)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6)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7)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8)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9)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10)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제10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3)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17 제7호보목2)부터 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가) 외의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붙임 2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서식) <신규 영업신고시 사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신규 영업신고를 할 때, 아래 서식 앞쪽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표시하고, 접수 받은 관할관청은 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일반음식점영업 []식품운반업 []기타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소분업 []식품냉동·냉장업 []제과점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옹기류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건물 외부 장소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자동판매기의 자동적인 혼합·처리 기능 여부 [] 해당 [] 미해당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한한다) 출입 여부 [] 해당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사전 컨설팅 신청서**

※ 사전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만 아래 신청서를 활용하여 작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대 표 자 성 명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소 소재지 (연락처)	
첨부서류		
1. 사전 컨설팅 체크리스트		

붙임 4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 컨설팅 체크리스트

영업소 이름 : [] 작성자 : []

체크리스트 항목(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참고)	OX/번호
1. 외부 또는 출입구에 손님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등 게시 여부	
2.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표시 여부	
3.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방법 **(아래 사례 중 영업자 선택 가능)** ① 접종증명서·건강수첩·앱 직접 확인 ② QR ③ 수기 기재	
4.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출입구에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의 장치 설치 여부(이동식, 접이식, 고정식 모두 가능)	
5. 음식점 등 내부에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게시 여부	
6.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장치 구비 **(아래 사례 중 영업자 선택 가능)** ① 반려동물 전용 의자, ② 케이지, ③ 목줄 고정 장치 등, ④ 별도 전용공간, ⑤ 모든 반려동물을 안거나, 케이지·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 제한 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음	
7. 고정장치, 전용의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에 맞게 식탁간격 관리 여부 **(아래 사례 중 영업자 선택 가능)** ① 모두 안거나, 케이지, 유모차만 이용하는 경우 간격 조정 불필요 ② 목줄고정장치 사용하는 경우, 목줄 길이에 따라 간격 조정	
8. 뚜껑·덮개 사용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아래 사례 중 영업자 선택 가능)** ① 픽업대(식탁)에 뚜껑·덮개 등을 비치하거나, ② 손님에게 뚜껑·덮개가 필요한지 문의 후 제공하거나, ③ "뚜껑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등의 문구를 메뉴판, 주문기기 등에 게시	
9.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 제공 여부 **(아래 사례 중 영업자 선택 가능)** ①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② 제공하는 경우 '반려동물용' 표시 및 손님용과 구분·보관 및 표시	
10. 반려동물용임이 표시된 별도 쓰레기통 구비 여부	

※ 2, 5, 8의 안내문 게시·표시는 붙임 5의 안내문을 사용하면 됨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체크리스트 작성 시 참고사항	
1. 안내문 게시	- 안내문의 규격이나 재질, 크기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2. 예방접종 출입 제한 표시	- 표시문의 규격이나 재질, 크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안내문 사용 시 적합]
3. 예방접종 확인	- 3가지 방법 중 1개만 운영해도 적합**(영업자 선택 가능)** ① 접종증명서·건강수첩·앱 직접 확인 ② QR ③ 수기 기재
4. 조리장 출입구 칸막이 설치	- 조리장 출입구 칸막이 설치(또는 준비)여부를 확인하며, 이동식, 접이식, 고정식 모두 가능하므로 설치여부 확인
5. 이동 제한 게시	- 게시문의 규격이나 재질, 크기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안내문 사용 시 적합]
6. 이동 제한 장치 구비	- 5가지 방법 중 한 개만 구비·운영하여도 적합**(영업자 선택 가능)**
7. 식탁 간격	- 매장에 상황에 따라 1개만 운영하여도 적합**(영업자 선택 가능)** - 목줄 고정장치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식탁 조정가능
8. 뚜껑·덮개 사용	- 3가지 방법 중 1개만 운영해도 적합**(영업자 선택 가능)** [안내문 사용 시 적합]
9. 반려동물용 식기 제공	- 2가지 방법 중 1개만 운영하여도 적합**(영업자 선택 가능)**
10. 별도 쓰레기통 구비	- 반려동물용임이 표시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있는지 확인 * 쓰레기통의 위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붙임 5 안내문[견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견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형견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선택사항〉

※ 영업자가 매장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반려동물 종류, 크기)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됩니다.

☑ 픽업대에 비치된 음식물 뚜껑·덮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뚜껑·덮개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영업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추가 가능